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3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3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3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3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3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III. 경영참고사항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6
나. 회사의 현황	9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2
<input type="checkbox"/>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12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67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71

주주총회소집공고

2014 년 10 월 08 일

회 사 명 : 동 양 기 전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양 재 하
본 점 소 재 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길 36(남촌동)
(전 화) 032-810-4100
(홈페이지) <http://www.d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 획 실 장 (성 명) 김 지 현
(전 화) 02-2600-43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1. 일시 : 2014년 10월 24일 (금) 오전 10시
2. 장소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길 36(남촌동) 동양기전 5층 시청각실

3. 회의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나.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 관계	당해법인과 거래내역	비 고
사외이사	채 규 전	(現) 산동유나이티드기계 동사장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사외이사	이 근 모	(現) Riverside Asia Partners 파트너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 상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분할기일부터 개시됨.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이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 요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기타

- 가. "경영참고사항" 및 "주주총회목적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송 태 호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14.01.28.	- 제36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및 영업보고 승인의 건 - 제36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찬성
2	2014.02.10.	- 차입한도 재약정 및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 (정책금융공사)	찬성
3	2014.02.25.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4	2014.03.10.	- Dongyang Mechatronics China Co., Ltd. 채무보증 입보의 건 (수출입은행)	찬성
5	2014.03.14.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임원보수 및 업무 분장 결정의 건	찬성
6	2014.04.01.	- 경영임원 보수 및 업무분장 결정의 건 - 이사(등기임원)의 타회사 임원 겸임 승인의 건	찬성
7	2014.04.08.	- 선물환 한도 재약정의 건 (국민은행) - Dongyang Mechatronics Jiangyin Co., Ltd. 채무보증 입보의 건 (국민은행 소주분행) - 단기차입금 한도 연장의 건 (하나은행) - Dongyang Mechatronics Jiangyin Co., Ltd. 채무보증 입보의 건 (산업은행 상해분행)	찬성
8	2014.05.12.	- 수출성장자금대출 재대출의 건 (수출입은행)	찬성
9	2014.06.10.	- 사내 일부 규정의 개정 및 제정의 건 - 장기자금 차입의 건 (국민은행) - 장기자금 차입의 건 (하나은행) - 수입신용장 한도 연장의 건 (국민은행)	찬성
10	2014.07.04.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의 건	찬성
11	2014.07.18.	- DY POWER INDIA Private Limited. 설립 신청의 건 - Dongyang Mechatronics India Pvt. 채무보증 입보의 건 (우리은행 CHENNAI BRANCH)	찬성
12	2014.08.13.	- 선물환 한도 만기연장의 건 (산업은행)	찬성

(*1) 2014.01.01일~제37기 반기보고서 제출일 까지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기재함.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750	24	24	-

(*1)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인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금액임.

(*2)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14.01.01일~2014.06.30일 까지의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2014. 06. 30. 기준]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채무보증	Dongyang Mechatronics Jiangyin Co., Ltd. (계열회사)	2011.06.~2016.06.	71	1.5%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 (계열회사)	2012.05.~2020.03.	75	1.6%

- (*1) 단일거래금액이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함
- (*2) 거래기간은 채무보증 계약일로부터 만기일까지를 기준임.
- (*3) 상기 거래금액은 2014년 6월 30일 기준 환율인 USD 1014.40원을 적용한 금액임
(Dongyang Mechatronics Jiangyin Co., Ltd. 채무보증액은 USD 7,000천이며,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 채무보증액은 KRW 7,538백만임)
- (*4) 상기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4,707억원 대비 비율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2014. 06. 30. 기준]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자동차부품

1. 산업의 특성

자동차 산업은 광범위한 산업 파급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종합기계산업인 동시에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입니다. 제조분야에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철강, 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의 기초산업과 약 2만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부품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의 기반이 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체의 내수 및 수출의 받침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의 생산 및 판매량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각종 기간산업의 성장을 유발하는 전방산업입니다.

최근의 자동차 시장은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주요 업체의 신형시장 전략 강화, 일본업체의 생산 정상화 등으로 업체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경기침체의 중심에 있는 유럽업체의 경우,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투자를 높이고, 신차 출시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경우 신차효과는 둔화되는 반면, 수입차의 수요층이 확대되어 수입차 판매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터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소형차 시장 성장 지속화와 신모델 대거 출시, 전기차 양산 등 친환경차 시장의 변화, 업계 판도 변화, 3강 체제형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근래의 국내 자동차 시장은 고유가에 따른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증가와 신차효과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산에도 고연비 소형차의 선호도 증가,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 전략차종 투입의 확대 등으로 생산 및 판매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자동차 시장의 경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불안요인이 존재하지만, 글로벌 시장 수요 증가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또한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생산량 증가는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사는 국내외 고객에게 주요 제품의 신규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매출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할 것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부품 산업의 성장성은 자동차 생산 대수 및 등록 대수 등 자동차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외부적으로 환율, 금리변동, 세계 경제성장률 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전세계적인 경기변동의 위험과 신형시장 내 경쟁의 심화 등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효율성과 위기관리능력,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시장의 안정성

자동차부품 사업부는 지속적인 품질정책 강화와 PROCESS 혁신으로 품질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타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 개발 시스템 도입으로 당사의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 가격,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고객 다각화와 수출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5. 경쟁상황

자동차 부품 시장은 최근 완성차 메이커의 요구에 맞춰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와 글로벌 소싱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친환경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유럽·미국 부품업체들의 통합, 합병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엔화약세와 독일 외 유럽업체의 구조조정 방향이 시장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글로벌 수요와 소형차 판매량에 따라 제품 포지셔닝이 변할 것입니다. 이에 자동차부품 사업부는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 우월한 품질 정착, 지속적인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경쟁요소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단점

최근 해외 부품산업은 핵심기술, 전략기술 획득을 위한 부품 기업 간의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부품시장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산업구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부품의 경쟁력이 국내가 아니고 세계 수준에서 평가되는 시기를 맞이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모터 메이커는 대부분이 외국 기업에 종속되었으며 외국기업은 기술력과 품질, 가격을 무기로 거대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인수합병과 대형화·전문화로 치달고 있는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환경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 사업부는 인도 현지화를 통해 신흥 개발도상국을 겨냥한 신규 매출처 확보를 통해 매출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센터를 별도 설립하여 미래 친환경 자동차사업의 선행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소싱 및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확대, 기업별 핵심 주력 품목 전문화, GLOBAL 품질경영 등 부품업계 스스로 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유압기기

1. 산업의 특성

유압기기는 유체의 압력, 유량, 속도, 방향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계장치의 자동제어, 동력전달 및 힘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능부품으로써 건설중장비, 공작기계, 수송기계, 특장차 등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유압기기는 각종 산업기계의 주요 기능 부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정밀도의 기술집약적인 제품으로써 여러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당사와 관련된 산업분야는 건설기계 및 산업차량 부문, 특장차 부문이며, 2014년의 성장은 중국시장의 경기회복을 비롯한 GLOBAL 경기회복 정도를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유압기기는 건설경기 등 전방산업의 수요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 분야로 전반적인 국내 경기 상황,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과 해외 경제동향 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으로 국가별 가격 경쟁력이 결정되므로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환율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4. 계절성

유압기기는 국내 건설 및 토목 산업이 가장 활발한 3월~6월을 성수기로, 7월~9월을 계절적 비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12월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일반적으로 완료되는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차이를 보입니다.

5. 시장의 안정성

유압기기 사업부문은 국내시장 1위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수의 영세 업체들과 대비하여 기술적, 자본적, 영업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10% 이상의 세계명품 BRAND에 선정되는 등 해외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시장을 확보 중입니다.

6. 경쟁상황

국내에서 유압실린더를 생산하는 업체는 선발업체인 당사를 포함하여 볼보코리아, 현대중공업과 다수의 영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볼보코리아와 현대중공업 등은 자체수요를 위한 생산을 하고 있으며, 다른 생산업체들은 낮은 기술 수준과 자본의 영세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주체로 진입하는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쟁 상대는 국내업체가 아니라 KAYABA, HENGLI, WIPRO 등의 해외 업체들입니다.

7. 경쟁요소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단점

유압기기 설계 및 생산기술은 아직 비 표준화 되어 있어 초기 시장진입이 어려우며, 시장 내에서도 신규 고객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으나, 당사는 국내에서 유압실린더를 자체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업체뿐 아니라 해외 선진 업체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독자적 설계 및 생산기술,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며, 세계 수준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갖추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산업기계

1. 산업의 특성

세차기 부문은 차량등록 및 운영 여부, 주유소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적 제약과 설치 시 공사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어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류사업 경기 흐름에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차량과 연관한 장비의 장착을 통해 운송 및 시공, 건설현장 등에서 운반기계 와 건설기계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이윤 및 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카 부문은 골프장에서만 활용되는 업종 특성상 영업 또한 골프장 관련 제품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으며, 골프장과 의 지속적인 업무 연관성을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14년 6월말 현재 국내의 주유소는 약 12,575개소, 충전소(2014년 2월말 기준) 약 1,941개소가 운영 중이며, 그 중휴업주유소는약 425개소, 폐업주유소 약 138개소로운영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한 신차 출시 등의 효과로 세차기 부문은 현재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장차 부문은 건설경기의 등락에 영향을 받는 특성상 관련 경기의 변동에 따라 성장성에 영향이 있지만, 기술의 발전 및 편의성의 추구, 인력 절감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골프카 부문은 신규 골프장 증가에 따른 신규수요 및 기존 대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골프장 수요가 성숙기로 진입할 경우에는 교체수요 위주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세차기 부문은 교체 수요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시장은 현재 포화상태로 신규투자가 위축되는 반면 교체 시장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투자 증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건설 및 자동차·운송산업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경기변동 또한 연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카 부문은 경기 변동에 따라 신규 골프장 건설기간의 편차가 발생하며, 교체 수요의 경우에도 골프장 내장객의 추세에 따라 교체 수요에 대한규모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4. 계절성

세차기 부문은 계절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이며, 2분기는 투자 활성화로 인한 증가,3분기는 기후요인에 따른 감소, 4분기는 투자 회복세와 연동하여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입니다. 특장차 부문은 특성상 하절기 및 동절기의 경우 일시적인 수요 감소 및 건설경기과 동반한 경기변동의 특성을 가집니다. 골프카 부분은봄과 가을 시즌에 성수기를 맞이하는 골프의 계절적 특성과 맞물려 봄, 가을 시즌에 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계절적수요 변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5. 시장의 안정성

세차기 부문은 국내시장의 성장 한계로 인하여 신규 수요 창출보다 교체 또는 틈새 수요로써 현상유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시장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건설업, 운송업 등의 발전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골프카 부문은 경기 변동에따라 시장 규모의 증감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신규 수요와 꾸준한 교체 수요에 힘입어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경쟁상황

세차기 부문은 한정된 국내 시장 여건과 투자 위축까지 겹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으며, 수익구조 또한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해외시장 역시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고객요구에 만족하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우수한 품질로써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장차 부문은 제품 특성상 신규 아이템의 개발과 시장 진입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국내시장은 3개 내외의 기업이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해외시장도 이와 유사하게 적은 수의 선점기업이 경쟁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골프카 부문은 품질 경쟁과 가격경쟁을 통해 당사와 수입업체가 점유율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7. 경쟁요소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단점

세차기 부문은 적시에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의 선점 지위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디자인과 전국적 서비스망 구축 등이 강점이며, 약점으로는 내수 위주의 편중된 판매 구조로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제품의 핵심부품인 유압실린더는 국내외적으로 품질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당사의 유압실린더의 적용으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쟁사의 저가 판매 등이 일시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카 부문은 가격, 성능 및 사후관리 부분이 큰 경쟁 요소로서 당사는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가격 경쟁력 및 체계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 골프장 관련 산업 경험이 풍부한 총판 대리점의 광범위한 영업망 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은 2014년 반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한 1,24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내수 부문은 전년동기대비 동일한 65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출 부문은 원화강세의 환율영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 감소한 58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은 미국과 중국 양대 시장이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 회복을 견인했던 BRICs 시장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년간 부진했던 일본 업체들이 품질혁신과 엔저 등의 내.외부효과로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판매는 내수 경기, 잠재적 대체수요의 확대 및 수입차의 시장 확대 등의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불안요인과 글로벌 시장 수요 증가, 한-EU FTA 추가 관세인하,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생산량 증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는 효율적 프로세스 도입과 생산성 개선을 통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이루고 국내외 고객에게 주요 제품의 신규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유압기기

유압기기 사업부문은 2014년 반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한 1,61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내수 부문은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한 49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출 부문은 북미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한 1,12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북미지역의 AWP용 실린더 판매와 현대중공업, HITACHI 등 글로벌업체로부터 신규 수주 달성을 통하여 매출 성장세 지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부문은 전반적인 국내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과 해외동향 등 전방산업의 수요 변동에 민감하며, 수출비중이 높아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급변하는 시장과 위험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주요 경쟁요소인 품질, 설계 기술, 생산기술과 가격 등에서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대형 기종 실린더의 공급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지속적신규 수주를 바탕으로 하여 안정적인 성장구조 정립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산업기계

산업기계 사업부문은 2014년 반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2% 감소한 5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내수 부문에서는 전년동기대비 4% 감소한 34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수출 부문에서는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21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세차기 부문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휴·폐업주유소의 증가 및 업체 간 가격경쟁에 따른 이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저소음 세차기의 적극적 판매량 증대와 정유사 직영 주유소의 세차 특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시장영업,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최근 세차기시장은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어려운 시장환경을 저비용 고효율의 전략모델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고객 요구에 맞춘 A/S품질 향상을 통해 교체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고객 친화적 영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직진식 크레인 대형기종의 판매 증대와 신규시장 진출이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는 소형부터 대형을 아우르는 멀티라인업 구축에 따른 시너지 발생 효과에 힘입어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넉클 크레인도 맞춤형 영업전략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국내외 경기회복이 변수로써 고객중심 영업과 제품 차별화 전략을 보다 공고히 하여 신규 해외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기존 해외시장 점유율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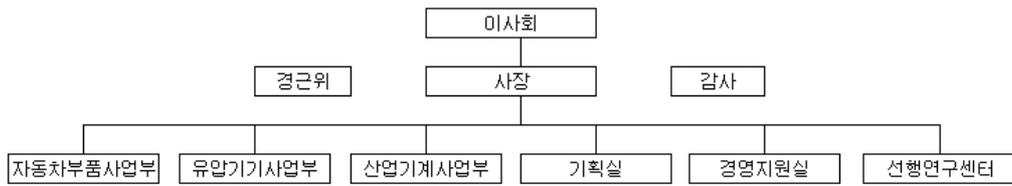
골프카 부문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 부실 및 법정관리 골프장의 증가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심화되는 업체간 경쟁 속에서 고객중심 마케팅과 고품질 저비용의 제품, 프로세스 최적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총판 대리점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시장인지도도를 높이고 있으며, 틈새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능, 품질, 디자인 등 차별화된 고객 만족형 제품을 개발 출시하여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주요재화 및 용역	매출액(억원)	구성비(%)	비고
자동차부품	자동차용 전장품 등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1,242	36%	-
유압기기	유압실린더 등 유공압기기 및 유공압기계 제조 및 판매업	1,614	47%	
산업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자동세차기, 카고크레인, 골프카 등 일반기계, 건설기계, 특장차 제조 및 판매업	560	17%	

(*1) 상기 매출액은 2014년 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수치임

(3)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동양기전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새로운 회사(이하 "인적분할신설회사") 및 물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새로운 회사(이하 "물적분할신설회사"라 하고, 인적분할신설회사 및 물적분할신설회사를 총칭하여 "분할신설회사")를 각각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분할의 목적]

(1) 투자사업과 산업기계 사업부문, 유압기기 사업부문,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을 분리하고 향후 투자사업과 산업기계 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성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마련으로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2)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 제고로 성과평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 사업부문별로 전문성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장 환경 및 제도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과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분할 내용 요약]

구분	상호	사업부문	비고	상장여부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	디와이주식회사	투자, 산업기계 및 임대 사업부문	지주회사	변경상장
인적분할신설회사	디와이파워주식회사	유압기기 사업부문	사업회사	재상장
물적분할신설회사	디와이오토주식회사	자동차부품 사업부문	사업회사	비상장

※ 상기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분할계획서상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1) 분할신설회사 내역

<인적분할신설회사 : 디와이파워주식회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유압기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인적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합니다.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디와이주식회사는 존속하며 그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 할 예정이며, 인적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합니다.

<물적분할신설회사 : 디와이오토주식회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물적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물적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2) 분할기일은 2014년 12월 1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각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요소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할 수있는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및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및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8)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2.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14년 07월 04일
분할계획서 작성일	2014년 07월 04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4년 07월 04일

증권신고서 제출일(예정일)	2014년 09월 15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4년 09월 30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4년 10월 24일
분할기일	2014년 12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14년 12월 01일
분할등기일(예정일)	2014년 12월 02일
기타일정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일	2014년 09월 15일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2014년 10월 01일~ 2014년 10월 07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2014년 10월 08일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14년 10월 27일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2014년 10월 27일~ 2014년 11월 30일
매매거래정지기간	2014년 11월 27일~ 변경상장 전일
변경상장(예정일)	2015년 01월 15일
재상장(예정일)	2015년 01월 15일

(*1) 상기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상기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예정임.

(*4)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3.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상호 변경

분할계획서 승인 후, 분할기일부터 동양기전주식회사에서 디와이주식회사(가칭)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감소할 자본금	감소할 준비금
5,520,854,000	93,379,149,284

(*1) 상기 금액은 2014년 3월 31일 별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2) 준비금 감소액은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 금액임.

(*3) 1주당 금액은 500원임.

(다) 자본감소의 방법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6512995주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

합니다.

(라)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주)

구분	종류	분할 전(A)	분할 후(B)	A-B
수권주식수(주)	보통주	80,000,000	80,000,000	-
발행주식수(주)	보통주	31,665,308	20,623,600	11,041,708
1주의 금액	보통주	500	500	-
자본금	보통주	15,832,654,000	10,311,800,000	5,520,854,000
준비금	-	57,033,169,422	-36,345,979,862	93,379,149,284

(*1) 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은 2014년 3월 31일 별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함.

(*2) 준비금 감소액은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 금액임.

(*3) 상기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 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별첨3]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14년 3월 31일 기준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으로 하되, 2014년 12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2014년 12월 1일(분할기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

는 것으로 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한다)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6) 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7)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

[2014. 03.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분할 전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I. 유동자산	258,747	55,955	107,729	95,063
1. 현금및현금성자산	26,677	26,677	-	-
2. 기타금융자산	18,456	1,993	6,879	9,584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5,609	11,429	72,815	71,365
4. 기타유동자산	1,945	591	661	693
5. 재고자산	56,060	15,265	27,374	13,421
II. 비유동자산	223,722	148,459	78,484	112,175
1. 비유동기타금융자산	4,236	2,908	724	604
2. 종속기업투자	56,156	115,594	16,939	39,019
3.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506	115	362	29
4. 기타비유동자산	2,082	905	866	311
5. 유형자산	157,153	25,912	59,407	71,834
6. 무형자산	3,184	2,358	351	475
7.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405	667	-165	-97
자 산 계	482,469	204,414	186,213	207,238
I. 유동부채	118,818	13,268	53,463	52,087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602	7,854	28,352	21,396
2. 차입금	49,841	209	21,832	27,800
3. 기타유동부채	8,912	3,193	2,982	2,738
4. 당기법인세부채	1,998	1,998	-	-
5. 기타유동금융부채	465	14	297	153
II. 비유동부채	80,026	6,422	28,955	44,649
1. 비유동기타금융부채	460	15	351	94
2. 비유동차입금	67,155	3,100	23,800	40,255
3. 비유동매입채무및기타채무	617	-	557	60
4. 총당부채	4,029	625	2,550	854

5. 퇴직급여부채	7,765	2,682	1,697	3,386
부 채 계	198,844	19,690	82,418	96,736
I. 자본금	15,833	10,312	5,521	5,000
II. 기타불입자본	57,033	-36,346	98,274	105,501
III. 이익잉여금	210,691	210,690	-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68	68	-	-
자 본 계	283,625	184,724	103,795	110,50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82,469	204,414	186,213	207,238
분 할 비 율	-	65.12995%	34.87005%	-

(*1) 상기 금액은 2014년 3월 31일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 금액임.

(*2)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하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3)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및 자본총계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할 전에 보유중인 자기주식(14,038,818,820원)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 분류되어 자산금액이 증가(4,895,343,142원, 분할신설회사 순자산 장부가액의 분할되는 회사 보유 지분해당액으로 분할기일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하여 변경될 예정임) 되었고,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회사가 교부받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금액(110,500,916,602원) 만큼 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① 분할비율 산정내역

분할대상부문 순자산의 장부가액(A)	103,795,346,426원	$A / (B+C)$ $= 34.87005\%$
분할 전 순자산의 장부가액(B)	283,624,477,944원	
분할 전 자기주식의 장부가액(C)	14,038,818,820원	

② 분할되는 회사인 디와이주식회사가 보유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주식 내역

구 분	금 액(원)	내 역
기 보유 주식 등	197,938,038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4,895,343,142	인적분할신설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액의 분할되는 회사 보유 지분 해당액으로 분할기일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하여 변경될 예정임.
물적분할 시 교부받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10,500,916,602	물적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의 장부가액임
합 계	115,594,197,782	

(8) 자산의 이전 시기 및 총 소요기간은 분할기일인 2014년 12월 1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등기·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분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9) 그 밖에 자산·부채의 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제1조 (상호)</p> <p>이 회사는 동양기전주식회사라 말한다.</p> <p>영문으로는 DONGYANG MECHATRONICS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p>	<p>제1조 (상호)</p> <p>이 회사는 디와이주식회사라 말하며, 영문으로는 DY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p>	상호 변경
<p>제2조 (목적)</p> <p>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공압기기 및 유공압기계 제조 및 판매업 2.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3. 일반기계 및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4. 각종 상품 구입 및 도산매업 5. 국내외 무역업 및 국내외 상사 대리점 6. 전기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업 7. 전기, 전자와 동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8. 각종 건설기계 및 특수사업 수송장비와 그 부분의 제조 및 판매업 9. 건설기계, 특장차,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각종기계의 매매 및 정비, 대여 10. 부동산 임대업 11.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 12. 기계장비 제조업 13. 폐기물처리 및 오염 방지시설 공사업 14.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및 판매업 15. 자동차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16. 항공 운수업 17. 통신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18. 전자전기 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19.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20.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업 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2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p>제2조 (목적)</p> <p>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기계 및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2. 각종 상품 구입 및 도산매업 3. 국내외 무역업 및 국내외 상사 대리점 4. 전기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업 5. 전기, 전자와 동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6. 각종 건설기계 및 특수사업 수송장비와 그 부분의 제조 및 판매업 7. 건설기계, 특장차,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각종기계의 매매 및 정비, 대여 8. 부동산 임대업 9.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 10. 기계장비 제조업 11. 폐기물처리 및 오염 방지시설 공사업 12.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및 판매업 13. 자동차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14. 전자전기 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15.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16.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업 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18.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19.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20.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업 21. 정보처리 내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조사용역, 생산, 판매, 유통, 컨설팅, 교육사업 22.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23.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2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사업목적의 분리와 신규사업 추가

<p>제10조 (신주인수권)</p> <p>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재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p>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p> <p>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p>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p>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p> <p>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격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p>개정된 자본시장법 상 신주의 발행/ 배정방식을 적용</p>
--------------------------------------------------------------------------------------------------------------------------------------------------------------------------------------------------------------------------------------------------------------------------------------------------------------------------------------------------------------------------------------------------------------------------------------------------------------------------------------------------------------------------------------------------------------------------------------------------------------------------------------------------------------------------------------------------------------------------------------------------------------------------------------------------------------------------------------------------------------------------------------------------------------------	---------------------------------------------------------------------------------------------------------------------------------------------------------------------------------------------------------------------------------------------------------------------------------------------------------------------------------------------------------------------------------------------------------------------------------------------------------------------------------------------------------------------------------------------------------------------------------------------------------------------------------------------------------------------------------------------------------------------------------------------------------------------------------------------------------------------------------------------------------------------------------------------------------------------------------------------------------------------------------------------------------------------------------------------------------------------------------------------------------------------------------------------------------------------------------------------------------------------------------------------------------------------------------------------------------------------------------------------------------------------------------------------------------------------------------------------------------------------------------------------------------------------------------------------------------------------------------------------------------------------------------------------------------------------	-----------------------------------------------------

<p>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경영·기술상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 및 합작예정법인 또는 제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5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3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p> <p>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p>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p> <p>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5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3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p>	<p>전환사채 발행과 배정에 관하여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신주의 발행/배정방식을 적용</p>
---------------------------------------------------------------------------------------------------------------------------------------------------------------------------------------------------------------------------------------------------------------------------------------------------------------------------------------------------------------------------------------------------------------------------------------------------------------------------------------------------------------------------------------------------------------------------------------------------------------------------------------------------------------------------------------------------------------------------------------------------------------------------------------------------------------------	------------------------------------------------------------------------------------------------------------------------------------------------------------------------------------------------------------------------------------------------------------------------------------------------------------------------------------------------------------------------------------------------------------------------------------------------------------------------------------------------------------------------------------------------------------------------------------------------------------------------------------------------------------------------------------------------------------------------------------------------------------------------------------------------------------------------------------------------------------------------------------------------------------------------------------------------------------------------------------------------------------------------------------------------------------------------------------------------------------------------------------------------------------------------------------------------------------------------------------------------------------------------------------------------------------------------------------------------------------	----------------------------------------------------

<p>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경영·기술상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 및 합작예정법인 또는 제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2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경)</p> <p>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p>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2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배정에 관하여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신주의 발행/배정방식을 적용</p>
<p>(신설)</p>	<p>부 칙</p> <p>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변경시행일</p>

4.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분할방식,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분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상호	국문명 : 디와이파워주식회사 영문명 : DY POWER Corporation	국문명 : 디와이오토주식회사 영문명 : DY AUTO Corporation
분할방식	인적분할	물적분할

목적	1. 유공압기계 및 유공압기계 제조 및 판매업 2. 일반기계 및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3. 각종 상품 구입 및 도산매업 4. 국내외 무역업 및 국내외 상사 대리점 5. 전기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업 6. 전기, 전자와 동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7. 각종 건설기계 및 특수사업 수송장비와 그 부분의 제조 및 판매업 8. 건설기계, 특장차,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각종기계의 매매 및 정비, 대여 9. 부동산 임대업 10. 기계장비 제조업 11.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업 1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1.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2. 각종 상품 구입 및 도산매업 3. 국내외 무역업 및 국내외 상사 대리점 4. 전기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업 5. 전기, 전자와 동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6. 부동산 임대업 7. 기계장비 제조업 8.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및 판매업 9. 전자전기 기계기구 및 관련기구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10.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11.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업 12.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13.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본점소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812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23
광고방법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power.dy.co.kr)에 게재함.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함.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auto.dy.co.kr)에 게재함.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함.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1) 상호, 광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

(2) 수권주식총수 및 1주의 금액

구분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상호	디와이파워주식회사	디와이오토주식회사
수권주식총수	80,000,000주	80,0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	5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분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상호	디와이파워주식회사	디와이오토주식회사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1,041,708주	10,000,000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보통주 11,041,708주	보통주 10,000,000주

(*) 상기 발행주식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분할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인적분할신설회사 : 디와이파워주식회사>

- ① 배정대상 :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기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 ② 배정비율 : 분할되는 회사 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배정.

주식의 종류	배정비율
보통주	0.3487005주

(*) 배정비율 산정근거 : 2014년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인적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순 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③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인적분할 신설회사 발행 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합니다.

④ 단주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인적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12월 1일

⑥ 신주의 배정방법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합니다.

⑦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11월 30일

⑧ 신주교부예정일 : 2015년 01월 14일(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⑨ 신주권의 상장계획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9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를 거쳐, 인적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재상장을 신청합니다.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을 허용합니다.

- 재상장 예정일 : 2015년 01월 15일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물적분할신설회사 : 디와이오토주식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100%를 분할되는 회사가 소유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위 (4)항 ④에 따라 지급되는 단주처리대금 이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 분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상호	디와이파워주식회사	디와이오토주식회사
자본금	5,520,854,000원	5,000,000,000원
준비금	98,274,492,426원	105,500,916,602원

(*1) 자본금은 전액 보통주 자본금이며, 보통주 1주당 금액은 500원임.

(*2) 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이며, 2014년 12월 1일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7)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8)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약력과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인적분할신설회사 : 디와이파워주식회사>

① 이사 및 감사의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비 고
대표이사	김 지 현	1959.08.23.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82) (주)대우('84~'98) (주)메디슨('01~'02)	상근
사내이사	양 재 하	1952.02.12.	서울대 경영학과 졸('74) 대우중공업(주)('77~'83)	비상근
사내이사	안 경 기	1963.10.27.	경북대 경영학과 졸('86) 대우중공업(주)('85~'04)	비상근
사외이사	안 병 훈	1955.09.12.	미국 STANFORD 대학원 기계공학과 졸('73) 미국 STANFORD대 경영과학 박사('78) KAIST 경영대학 교수('78~)	비상근
감 사	정 해 봉	1954.08.12.	인하대 경영학과 졸('82) 두산인프라코어('76~'08) 두산DST('08~'13)	상근

(*1) 상기 임원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될 수 있음.

(*2) 상기 임원의 임기는 인적분할신설회사의 분할기일로부터 개시됨.

②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단위 : 백만원)

구분	보수한도액	비고
이 사	750	-
감 사	150	-

(*1) 단,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함.

(*2) 인적분할신설회사 이사 및 감사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은 [별첨5]인적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함 (단, 동 규정의 시행일자는 인적분할신설회사 설립일자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물적분할신설회사 : 디와이오토주식회사>

① 이사 및 감사의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비 고
대표이사	이 귀 영	1950.09.08.	서울대 대학원 기계공학과 졸('82) 미국 BERKELEY 기계공학 박사('84) 대우자동차(주)('87~92) 고등기술연구원('93~02) (주)네오포텍 대표('02~05)	상근
사내이사	양 재 하	1952.02.12.	서울대 경영학과 졸('74) 대우중공업(주)('77~'83)	비상근

사내이사	안 경 기	1963.10.27.	경북대 경영학과 졸('86) 대우중공업(주)('85~'04)	비상근
감 사	노 석 구	1948.12.15.	한양대 금속공학과 졸('76) 두산인프라코어(주)('77~'05)	비상근

(*1) 상기 임원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될 수 있음.

(*2) 상기 임원의 임기는 물적분할신설회사의 분할기일로부터 개시됨.

②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단위 : 백만원)

구분	보수한도액	비고
이 사	750	-
감 사	150	-

(*1) 단,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함.

(*2) 물적분할신설회사 이사 및 감사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은 [별첨5] 물적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함 (단, 동 규정의 시행일자는 물적분할신설회사 설립일자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4] 정관과 같습니다. 다만 [별첨4]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합니다.

(10) 분할등기일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2014년 12월 2일을 분할등기(예정)일로 합니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방법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합니다.

다.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연결 재무제표

【동양기전주식회사】

< 연결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

제 36 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 35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1. 유동자산	355,307	324,287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73,288	77,867
2) 기타금융상품	19,462	15,274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70,053	140,835
4) 기타유동자산	3,217	4,256
5) 재고자산	89,273	86,055
6) 당기법인세자산	14	-
2. 비유동자산	260,365	249,171
1) 비유동기타금융자산	4,950	9,298
2) 관계기업투자	-	668
3) 비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59	174
4) 기타비유동자산	2,463	2,658
5) 유형자산	241,013	225,611
6) 무형자산	7,539	7,617
7) 이연법인세자산	4,141	3,145
자 산 총 계	615,672	573,458
1. 유동부채	170,709	153,351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68,184	51,543
2) 차입금	87,025	76,645
3) 기타유동부채	11,763	10,245
4) 당기법인세부채	3,737	14,915
5) 유동기타금융부채	-	3
2. 비유동부채	105,057	105,889
1) 비유동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534	397
2) 비유동차입금	91,056	95,790
3) 비유동기타금융부채	-	7
4) 총당부채	5,716	3,158
5) 퇴직급여채무	7,113	6,204
6) 이연법인세부채	638	333
부 채 총 계	275,766	259,240
[지배회사 지분]	339,895	314,207
1. 자본금	15,833	15,833
2. 기타불입자본	57,017	57,017
3. 이익잉여금	263,572	240,250
4. 기타자본구성요소	3,473	1,107
[비지배지분]	11	11
자 본 총 계	339,906	314,218
부채와 자본총계	615,672	573,458

<연 결 손 익 계 산 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36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35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6기	제 35 기
1. 매출액	751,417	732,853
2. 매출원가	651,515	624,867
3. 매출총이익	99,902	107,987
4. 물류비	16,099	16,675
5. 판매비 와 일반관리비	44,510	45,108
6. 영업이익	39,293	46,203
7. 기타수익	7,727	8,875
8. 기타비용	8,849	7,471
9. 금융이익	13,972	23,235
10. 금융비용	8,702)	9,045
11. 관계기업손익	(104)	(83)
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3,337	61,714
13. 법인세비용	11,437	20,228
14. 당기순이익	31,900	41,486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1,918	41,510
[비지배지분]	(18)	(24)
15. 기타포괄손익	(184)	(7,885)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774)	(723)
2) 지분법자본변동	59	(43)
3) 해외사업환산손익	2,894	(6,734)
4) 보험수리적손익	(3,339)	(745)
5) 법인세효과	976	360
16. 총포괄손익	31,716	33,60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1,733	33,625
[비지배지분]	(17)	(24)
17.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원)	1,055	1,360
2) 희석주당이익(원)	1,055	1,360

(2) 별도 재무제표

【동양기전주식회사】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36 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 35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1. 유동자산	245,037	234,117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5,590	36,361
2) 기타금융상품	19,385	15,273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38,566	123,621
4) 기타유동자산	1,405	1,566
5) 당기법인세자산	-	-
6) 재고자산	60,091	57,296
2. 비유동자산	225,635	208,342
1) 비유동기타금융자산	4,934	8,801
2) 종속기업투자	56,156	54,480
3) 비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71	706
4) 기타비유동자산	1,849	1,719
5) 유형자산	155,808	137,533
6) 무형자산	3,358	3,243
7) 이연법인세자산	2,959	1,860
자 산 총 계	470,672	442,459
1. 유동부채	109,128	103,508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9,169	38,409
2) 차입금	50,173	43,970
3) 기타유동부채	6,185	5,640
4) 당기법인세부채	3,173	14,984
5) 유동기타금융부채	428	505
2. 비유동부채	80,086	79,800
1) 비유동기타금융부채	427	723
2) 비유동차입금	68,805	71,450
3) 비유동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534	397
4) 총당부채	4,190	1,774
5) 퇴직급여채무	6,130	5,456
부 채 총 계	189,214	183,308
1. 자본금	15,833	15,833
2. 기타불입자본	57,033	57,033
3. 이익잉여금	208,531	185,638
4. 기타자본구성요소	61	648
자 본 총 계	281,458	259,151
부채와 자본총계	470,672	442,459

< 별도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36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35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1. 매출액	618,703	620,726
2. 매출원가	537,994	528,676
3. 매출총이익	80,709	92,050
4. 물류비	12,609	13,744
5. 판매비 와 일반관리비	34,586	35,668
6. 영업이익	33,514	42,638
7. 기타수익	4,692	4,755
8. 기타비용	9,000	7,875
9. 금융이익	16,353	27,439
10. 금융비용	6,426	5,971
1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9,133	60,986
12. 법인세비용	7,721	17,085
13. 당기순이익	31,412	43,901
14. 기타포괄손익	(3,058)	(1,127)
1) 보험수리적 손익	(2,472)	(579)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586)	(548)
15. 총포괄손익	28,354	42,774
16. 주당이익	-	-
1) 기본주당이익(원)	1,038	1,438
2) 희석주당이익(원)	1,038	1,438

※ 기타 참고사항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가)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1)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 (2) 분할일정
- (3) 분할비율
- (4)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6)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 (7)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8)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9)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1) 분할되는 회사

2014년 11월 27일부터 변경상장일 전(변경상장 예정일 : 2015년 1월 15일)까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단,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인적분할신설회사

2014년 11월 27일부터 재상장일 전(재상장 예정일 : 2015년 1월 15일)까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단,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단순분할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 및 인적분할신설회사는 정관상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마)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보고총회와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는 각각의 이사회 결의의 공고로 갈음합니다.

(바)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사)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아) 인적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주요 요건의 검토

요건	내용	검토결과	충족여부
주된 영업의 계속연수	이전된 주된 영업부문이 과거 3년이상 계속 영위되어 왔을 것	분할되는 사업부문은 3년이상 계속하여 주된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충족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일 것	2014년 1분기말 1,038억원	충족
발행주식총수	100만주 이상(최대주주등 제외)일 것	11,041,708주	충족
매출액	분할로 이전된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일 것	2013년도 매출액 2,695억원	충족
영업이익 또는 세전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분할로 이전된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총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25억원 이상일 것	2013년도 영업이익 217억원 2013년도 세전이익 253억원 2013년도 순이익 197억원	충족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적정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감사인의 검토의견과 감사의견 모두 적정임	충족
주식분산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재상장하는 경우에는 분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자본상태	자본잠식이 없을 것	자본잠식 없음	충족
사외이사 선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은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사외이사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	2013년말 자산총액 1,777억원이며, 이사 총 4명 중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함	충족
감사위원회 설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총위원의 2/3이상을 사외이사로구성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부도발생사실	부도발생사실이 있었던 경우 예비상장 심사청구일부터 1년 이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소송 등의 계류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제한 없음	충족

(자) 기타 사항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첨목록]

-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
- [별첨 3] 승계대상 소송목록
- [별첨 4] 분할신설회사 정관
- [별첨 5] 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지규정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분할 전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I. 유동자산	258,746,755,315	55,954,738,350	107,729,024,691	95,062,992,274
1. 현금및현금성자산	26,677,225,100	26,677,225,100	-	-
(1) 현금	7,989,130	7,989,130	-	-
(2) 현금성자산	26,669,235,970	26,669,235,970	-	-
2. 기타금융자산	18,455,770,204	1,993,206,049	6,878,702,225	9,583,861,930
(1) 단기금융상품	10,627,236,937	1,627,236,937	-	9,000,000,000
(2) 유동성통화선도차	7,628,533,267	165,969,112	6,878,702,225	583,861,930
(3) 단기매매증권	200,000,000	200,000,000	-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5,608,758,129	11,429,136,794	72,814,603,849	71,365,017,486
(1) 외상매출금	92,377,785,266	10,435,645,629	47,099,581,164	34,842,558,473
(2) 유동성할부외상매출금	101,878,184	101,878,184	-	-
(3) 받을어음	56,780,802,093	507,150,140	22,109,758,047	34,163,893,906
(4) 단기대여금	166,327,348	-	-	166,327,348
(5) 미수금	6,065,150,701	379,337,955	3,591,596,476	2,094,216,270
(6) 미수수익	116,814,537	5,124,886	13,668,162	98,021,489
4. 기타유동자산	1,944,779,290	590,589,851	661,651,066	692,538,373
(1) 선급금	435,330,295	274,059,882	22,246,000	139,024,413
(2) 선급비용	1,507,216,495	314,329,969	639,372,566	553,513,960
(3) 기타유동자산	2,232,500	2,200,000	32,500	-
5. 재고자산	56,060,222,592	15,264,580,556	27,374,067,551	13,421,574,485
(1) 상품	723,152,955	56,829,633	666,323,322	-
(평가충당금)	-49,454,610	-49,454,610	-	-
(2) 제품	24,410,118,070	1,746,752,321	15,784,596,225	6,878,769,524
(평가충당금)	-531,687,139	-36,791,614	-237,653,087	-257,242,438
(3) 반제품	18,171,512,572	8,064,795,254	6,069,327,775	4,037,389,543
(평가충당금)	-345,487,736	-233,362,747	-	-112,124,989
(4) 재공품	354,728,260	354,728,260	-	-
(평가충당금)	-	-	-	-
(5) 원재료	13,051,969,061	5,637,963,426	4,916,135,660	2,497,869,975
(평가충당금)	-825,005,589	-318,748,012	-414,022,326	-92,235,251
(6) 미착품	1,100,376,748	41,868,645	589,359,982	469,148,121
II. 비유동자산	223,721,776,331	148,459,529,753	78,483,891,507	112,174,614,815

1. 비유동기타금융자산	4,235,856,643	2,908,543,194	723,801,720	603,511,729
(1) 장기성금융상품	3,000,000	3,000,000	-	-
(2) 국공채채권	591,240,000	54,360,000	156,000,000	380,880,000
(3) 투자주식	2,900,492,460	2,836,000,000	-	64,492,460
(4) 출자금	400,000	-	-	400,000
(5) 비유동통화선도차	740,724,183	15,183,194	567,801,720	157,739,269
2. 증속기업투자	56,156,087,319	115,594,197,782	16,938,570,000	39,019,579,281
3.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505,349,417	114,763,301	361,892,344	28,693,772
(1) 장기성매출채권	114,763,301	114,763,301	-	-
(2) 장기미수금	259,586,116	-	240,892,344	18,693,772
(3) 장기대여금	131,000,000	-	121,000,000	10,000,000
4. 기타비유동자산	2,081,730,306	905,384,922	866,087,996	310,257,388
(1) 장기선급비용	129,737,188	43,174,922	-	86,562,266
(2) 임차보증금	1,936,986,772	847,800,000	865,597,000	223,589,772
(3) 지급보증금	15,006,346	14,410,000	490,996	105,350
5. 유형자산	157,153,350,063	25,911,510,215	59,407,683,650	71,834,156,198
(1) 토지	29,419,316,656	7,461,695,680	14,078,081,316	7,879,539,660
(2) 건물	65,094,042,548	23,205,497,588	22,102,835,578	19,785,709,382
(국가보조금)	-717,598,758	-	-	-717,598,758
(감가상각누계액)	-14,757,972,884	-8,904,505,257	-4,924,095,754	-929,371,873
(3) 구축물	9,988,006,260	1,308,904,200	7,905,434,244	773,667,816
(국가보조금)	-7,060,838	-	-7,060,838	-
(감가상각누계액)	-4,649,622,418	-1,012,277,289	-3,568,867,606	-68,477,523
(4) 기계장치	103,177,960,079	5,170,612,416	44,201,369,782	53,805,977,881
(국가보조금)	-1,900,933,025	-	-1,169,752,664	-731,180,361
(감가상각누계액)	-45,496,889,360	-3,385,692,997	-21,215,565,736	-20,895,630,627
(5) 차량운반구	1,134,788,422	437,085,960	415,366,619	282,335,843
(국가보조금)	-	-	-	-
(감가상각누계액)	-833,880,466	-287,938,254	-375,129,577	-170,812,635
(6) 공구와기구	34,480,228,389	2,258,300,748	3,873,055,909	28,348,871,732
(국가보조금)	-1,227,723,984	-	-334,870,134	-892,853,850
(감가상각누계액)	-22,614,998,717	-1,175,143,427	-2,634,428,055	-18,805,427,235
(7) 비품	11,818,965,675	3,980,637,643	3,422,737,711	4,415,590,321
(국가보조금)	-2,706,669	-	-2,706,669	-
(감가상각누계액)	-8,582,904,767	-3,243,580,716	-2,569,620,476	-2,769,703,575
(8) 건설중인자산	2,832,333,920	97,913,920	210,900,000	2,523,520,000
6. 무형자산	3,183,654,438	2,358,272,102	350,465,242	474,917,094
(1) 특허권	466,610,632	39,446,590	94,940,608	332,223,434
(국가보조금)	-12,607,158	-	-11,793,144	-814,014
(감가상각누계액)	-193,489,097	-17,025,682	-47,829,333	-128,634,082
(2) 의장권	11,350,227	3,954,227	-	7,396,000
(감가상각누계액)	-6,932,371	-1,011,371	-	-5,921,000
(3) 상표권	2,051,680	2,051,680	-	-
(감가상각누계액)	-1,840,588	-1,840,588	-	-
(4) 실용신안권	39,299,000	11,776,000	10,696,000	16,827,000
(국가보조금)	-238,231	-	-238,231	-

(감가상각누계액)	-28,250,483	-8,125,900	-9,589,400	-10,535,183
(5) 소프트웨어	6,428,161,068	3,823,853,863	438,751,497	2,165,555,708
(국가보조금)	-74,059,592	-	-55,170,529	-18,889,063
(감가상각누계액)	-4,531,946,398	-2,389,115,876	-260,538,816	-1,882,291,706
(6) 개발비	3,486,892,922	3,486,892,922	-	-
(감가상각누계액)	-3,156,108,937	-3,156,108,937	-	-
(7) 기타무형자산	781,170,864	589,934,274	191,236,590	-
(감가상각누계액)	-26,409,100	-26,409,100	-	-
7.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405,748,145	666,858,237	-164,609,445	-96,500,647
자 산 계	482,468,531,646	204,414,268,103	186,212,916,198	207,237,607,089
I. 유동부채	118,818,236,154	13,267,542,413	53,463,390,274	52,087,303,467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57,601,933,417	7,853,910,478	28,351,943,388	21,396,079,551
(1) 외상매입금	45,293,996,681	6,211,278,191	22,254,528,763	16,828,189,727
(2) 지급어음	2,710,988,617	-	581,734,830	2,129,253,787
(3) 미지급금	9,536,948,119	1,582,632,287	5,515,679,795	2,438,636,037
(4) 예수보증금	60,000,000	60,000,000	-	-
2. 차입금	49,840,562,426	208,562,426	21,832,000,000	27,800,000,000
(1) 외화단기차입금	16,240,562,426	208,562,426	16,032,000,000	-
(2) 유동성장기부채	33,600,000,000	-	5,800,000,000	27,800,000,000
3. 기타유동부채	8,912,707,947	3,192,536,394	2,981,742,721	2,738,428,832
(1) 선수금	1,660,321,307	1,025,252,446	11,821,130	623,247,731
(2) 예수금	563,947,053	209,485,983	203,145,020	151,316,050
(3) 미지급비용	6,120,792,766	1,752,991,386	2,485,797,470	1,882,003,910
(4) 선수수익	566,802,421	203,962,179	280,979,101	81,861,141
(5) 미지급배당금	844,400	844,400	-	-
4. 당기법인세부채	1,998,171,784	1,998,171,784	-	-
5. 기타유동금융부채	464,860,580	14,361,331	297,704,165	152,795,084
(1) 통화선도대(유동)	61,708,963	14,361,331	43,496,702	3,850,930
(2) 금융보증부채(유동)	403,151,617	-	254,207,463	148,944,154
II. 비유동부채	80,025,817,548	6,422,251,030	28,954,179,498	44,649,387,020
1. 비유동기타금융부채	460,334,665	15,245,087	350,921,034	94,168,544
(1) 통화선도대(비유동)	103,178,430	15,245,087	82,977,859	4,955,484
(2) 금융보증부채(비유동)	357,156,235	-	267,943,175	89,213,060
2.. 비유동차입금	67,155,000,000	3,100,000,000	23,800,000,000	40,255,000,000
(1) 원화장기차입금	67,155,000,000	3,100,000,000	23,800,000,000	40,255,000,000
3. 비유동매입채무및기타채무	616,543,694	-	556,598,966	59,944,728
(1) 장기성미지급금	616,543,694	-	556,598,966	59,944,728
4. 총당부채	4,028,732,335	624,720,488	2,549,606,988	854,404,859
(1) 판매보증총당금	2,028,732,335	624,720,488	549,606,988	854,404,859
(2) 기타총당부채	2,000,000,000	-	2,000,000,000	-
5. 퇴직급여부채	7,765,206,854	2,682,285,455	1,697,052,510	3,385,868,889
(1) 퇴직급여충당금	35,187,024,014	12,264,228,035	13,061,947,415	9,860,848,564
(국민연금전환금)	-42,285,266	-18,299,366	-16,956,700	-7,029,200
(퇴직보험예치금)	-27,379,531,894	-9,563,643,214	-11,347,938,205	-6,467,950,475
부 채 계	198,844,053,702	19,689,793,443	82,417,569,772	96,736,690,487
I. 자본금	15,832,654,000	10,311,800,000	5,520,854,000	5,000,000,000

II. 기타불입자본	57,033,169,422	-36,345,979,862	98,274,492,426	105,500,916,602
1. 자본잉여금	71,071,988,242	71,071,988,242	98,274,492,426	105,500,916,602
(1) 주식발행초과금	64,335,439,239	64,335,439,239	98,274,492,426	105,500,916,602
(2) 기타자본잉여금	6,672,843,657	6,672,843,657	-	-
(3) 전환권 대가	63,705,346	63,705,346	-	-
2. 자기주식	-14,038,818,820	-9,143,475,678	-	-
3. 감자차손	-	-98,274,492,426	-	-
III. 이익잉여금	210,690,588,668	210,690,588,668	-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68,065,854	68,065,854	-	-
자 본 계	283,624,477,944	184,724,474,660	103,795,346,426	110,500,916,602
부채및자본총계	482,468,531,646	204,414,268,103	186,212,916,198	207,237,607,089

(*1) 상기 금액은 2014년 3월 31일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 금액임.

(*2)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3)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및 자본총계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할 전에 보유중인 자기주식(14,038,818,820원)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어 자산금액이 증가(4,895,343,142원, 분할신설회사 순자산 장부가액의 분할되는 회사 보유 지분해당액으로 분할기일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하여 변경될 예정임) 되었고,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회사가 교부받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금액(110,500,916,602원) 만큼 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1. 기타금융자산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기타금융자산	단기금융상품	-	9,000,000,000
	유동성통화선도차	6,878,702,225	583,861,930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47,099,591,867	35,075,061,742
	(대손충당금)	-10,703	-232,503,269
	받을어음	22,109,758,047	34,163,893,906
기타채권	단기대여금	-	166,327,348
	미수금	3,591,596,476	2,095,085,055
	(대손충당금)	-	-868,785
	미수수익	13,668,162	98,021,489

3. 기타유동자산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22,246,000	139,024,413
	선급비용	639,372,566	553,513,960
	기타의유동자산	32,500	-

4. 재고자산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재고자산	상품	666,323,322	-
	(평가충당금)	-	-
	제품	15,784,596,225	6,878,769,524
	(평가충당금)	-237,653,087	-257,242,438
	반제품	6,069,327,775	4,037,389,543
	(평가충당금)	-	-112,124,989
	원재료	4,916,135,660	2,497,869,975
	(평가충당금)	-414,022,326	-92,235,251

	미착품	589,359,982	469,148,121
--	-----	-------------	-------------

5. 비유동자산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비유동기타금융자산	국공채채권	156,000,000	380,880,000
	투자주식	-	64,492,460
	출자금	-	400,000
	비유동통화선도차	567,801,720	157,739,269

6. 종속기업투자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종속기업 투자	Dongyang Mechatronics Jiangyin Co., Ltd	16,938,570,000	-
	Dongyang Mechatronics China Co., Ltd.	-	29,825,754,536
	Dongyang Mechatronics India Pvt.	-	5,087,919,015
	(주)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	-	4,105,905,730

7. 비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비유동기타채권	장기미수금	240,892,344	18,693,772
	장기대여금	121,000,000	10,000,000

8. 기타비유동자산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비용	-	86,562,266
	임차보증금	865,597,000	223,589,772
	지급보증금	490,996	105,350

9. 유형자산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유형자산	토지	14,078,081,316	7,879,539,660
	건물	22,102,835,578	19,785,709,382

	(국고보조금)	-	-717,598,758
	(감가상각누계액)	-4,924,095,754	-929,371,873
	구축물	7,905,434,244	773,667,816
	(국고보조금)	-7,060,838	-
	(감가상각누계액)	-3,568,867,606	-68,477,523
	기계장치	44,201,369,782	53,805,977,881
	(국고보조금)	-1,169,752,664	-731,180,361
	(감가상각누계액)	-21,215,565,736	-20,895,630,627
	차량운반구	415,366,619	282,335,843
	(국고보조금)	-	-
	(감가상각누계액)	-375,129,577	-170,812,635
	공구와기구	3,873,055,909	28,348,871,732
	(국고보조금)	-334,870,134	-892,853,850
	(감가상각누계액)	-2,634,428,055	-18,805,427,235
	비품	3,422,737,711	4,415,590,321
	(국고보조금)	-2,706,669	-
	(감가상각누계액)	-2,569,620,476	-2,769,703,575
	건설중인자산	210,900,000	2,523,520,000

10. 무형자산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무형자산	특허권	94,940,608	332,223,434
	(국고보조금)	-11,793,144	-814,014
	(감가상각누계액)	-47,829,333	-128,634,082
	의장권	-	7,396,000
	(국고보조금)	-	-
	(감가상각누계액)	-	-5,921,000
	실용신안권	10,696,000	16,827,000
	(국고보조금)	-238,231	-
	(감가상각누계액)	-9,589,400	-10,535,183
	소프트웨어	438,751,497	2,165,555,708
	(국고보조금)	-55,170,529	-18,889,063
	(감가상각누계액)	-260,538,816	-1,882,291,706
	기타의무형자산	191,236,590	-

1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	-----	----------	----------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22,254,528,763	16,828,189,727
	지급어음	581,734,830	2,129,253,787
기타채무	미지급금	5,515,679,795	2,438,636,037

12. 차입금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단기차입금	외화단기차입금	16,032,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5,800,000,000	27,800,000,000

13. 기타유동부채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11,821,130	623,247,731
	예수금	203,145,020	151,316,050
	미지급비용	2,485,797,470	1,882,003,910
	선수수익	280,979,101	81,861,141

14. 기타유동금융부채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기타유동금융부채	통화선도대(유동)	43,496,702	3,850,930
	금융보증부채(유동)	254,207,463	148,944,154

15. 비유동기타금융부채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비유동기타금융부채	통화선도대(비유동)	82,977,859	4,955,484
	금융보증부채(비유동)	267,943,175	89,213,060

16. 비유동차입금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비유동차입금	원화장기차입금	23,800,000,000	40,255,000,000

17. 비유동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비유동기타채무	장기성미지급금	556,598,966	59,944,728

18. 총당부채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총당부채	판매보증총당금	549,606,988	854,404,859
	기타총당부채	2,000,000,000	-

19. 퇴직급여부채

[2014. 03. 3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인적분할신설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퇴직급여부채	퇴직급여총당금	13,061,947,415	9,860,848,564
	국민연금전환금)	-16,956,700	-7,029,200
	퇴직보험예치금)	-11,347,938,205	-6,467,950,475

[별첨3] 승계대상 소송목록

<인적분할신설회사 : 디와이파워주식회사>

원고	피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백만원)	진행상황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Paul Boucher	Genie Industries, Terex Corporation, Dongyang America	유압실린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5,000,000 (CAD)	소송 피고를 Dongyang America에 서 당사(동양기전)로 변경해 줄 것 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본 변경절 차가 진행 중임	추정 불가

<물적분할신설회사 : 디와이오토주식회사>

원고	피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백만원)	진행상황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항 없음					

[별첨4] 분할신설회사 정관

<인적분할신설회사 : 디와이파워주식회사>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디와이파워주식회사라 말하며, 영문으로는 DY POWER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유공압기기 및 유공압기계 제조 및 판매업
2. 일반기계 및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3. 각종 상품 구입 및 도산매업
4. 국내외 무역업 및 국내외 상사 대리점
5. 전기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업
6. 전기, 전자와 동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7. 각종 건설기계 및 특수사업 수송장비와 그 부분의 제조 및 판매업
8. 건설기계, 특장차,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각종기계의 매매 및 정비, 대여
9. 부동산 임대업
10. 기계장비 제조업
11.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업
1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power.dy.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1,041,708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20,000,000주로 한

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주배당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한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 (본 회사의 등기이사를 제외한다)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등기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만료일을 당해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규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 4 (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 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한 자기주식의 소각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신주의 배당기준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의 2 (전자주주명부)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3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 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5조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발행조건, 상환기간 등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음.

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 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5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3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2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 총회

제18조 (소집기간)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창원에서 발행하

는 경남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모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4 이상의 수와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타 회사가 당사를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제29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되,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하로 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최대주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하는 집중투표제의 표결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각자 대표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 3 (경영임원)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경영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한다.
- ③ 경영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경영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 4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7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80%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 1. 타 회사가 당해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할 경우 (내·외국인 포함)
 -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3.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이사회 의장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요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1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2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43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는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 ①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공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② 선임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46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6조의 2 (분기배당)

-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제정시행일) 이 정관은 분할 주주총회 승인 후, 분할기일(2014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발 기 인

동양기전주식회사

<물적분할신설회사 : 디와이오토주식회사>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디와이오토주식회사라 말하며, 영문으로는 DY AUTO Corporation이라 표

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2. 각종 상품 구입 및 도산매업
3. 국내외 무역업 및 국내외 상사 대리점
4. 전기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업
5. 전기, 전자와 동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6. 부동산 임대업
7. 기계장비 제조업
8.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및 판매업
9. 전자전기 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10.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11.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업
12.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13.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auto.dy.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20,000,000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주배당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의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한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 (본 회사의 등기이사를 제외한다)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등기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만료일을 당해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규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 4 (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 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

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한 자기주식의 소각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신주의 배당기준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의 2 (전자주주명부)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3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5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발행조건, 상환기간 등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음.

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5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3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2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8조 (소집기간)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모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4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타 회사가 당사를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제29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한다.
-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하로 한다.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최대주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이사회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하는 집중투표제의 표결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 ①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각자 대표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 3 (경영임원)

- ①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경영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한다.
- ③ 경영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경영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 4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7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80%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 1. 타 회사가 당해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할 경우 (내·외국인 포함)
 -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3.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이사회 의장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요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1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2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43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는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채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 ①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공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② 선임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46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6조의 2 (분기배당)

-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용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제정시행일) 이 정관은 분할 주주총회 승인 후, 분할기일(2014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발 기 인

동양기전주식회사

[별첨5] 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지규정

<인적분할신설회사 : 디와이파워주식회사>

임원 퇴직금지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상법 제388조, 정관 제41조 제2항 및 제35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임원의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하 동일)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등기임원 :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로써,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되어 있는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 ② 경영임원 : 정관 제35조의3에서 정한 자로써,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경영 목적상 상기 제1항의 등기임원과 동등한 직위를 가지고 사실상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이상의 임원을 말한다.

제 3 조 (퇴직시기)

임원의 퇴직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

제 4 조 (퇴직금 산출방법)

- ① 이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1년 이상이 된 자가 퇴직하였을 경우에 지급한다.
- ③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와 제5조의 퇴직금 지급률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 5 조 (퇴직금 지급률)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재임 매일년에 대해 도표와 같이 시행한다.

직 위	지 급 기 준 율	비 고
회장.부회장.사장	재임기간 1년당 3	
부사장,전무이사	" 2.5	
상무이사,이사,감사	" 2	

제 6 조 (재임기간의 산정)

- ① 재임기간은 최초로 임원에 선임된 날로부터 실근무 종료일 까지로 한다.
- ② 재임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은1개월로 계산한다.

제 7 조 (특별 공로금)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 4 조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제 4 조의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특별 공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개 폐)

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제정시행일)

이 규정은 분할주주총회 승인 후, 분할기일(201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물적분할신설회사 : 디와이오토주식회사>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상법 제388조, 정관 제41조 제2항 및 제35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임원의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하 동일)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등기임원** :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로써,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되어 있는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 ② **경영임원** : 정관 제35조의3에서 정한 자로써,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경영 목적상 상기 제1항의 등기임원과 동등한 직위를 가지고 사실상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이상의 임원을 말한다.

제 3 조 (퇴직시기)

임원의 퇴직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

제 4 조 (퇴직금 산출방법)

- ① 이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1년 이상이 된 자가 퇴직하였을 경우에 지급한다.
- ③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와 제5조의 퇴직금 지급률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 5 조 (퇴직금 지급률)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재임 매일년에 대해 도표와 같이 시행한다.

직 위	지 급 기 준 율	비 고
회장.부회장.사장	재임기간 1년당 3	
부사장,전무이사	" 2.5	
상무이사,이사,감사	" 2	

제 6 조 (재임기간의 산정)

- ① 재임기간은 최초로 임원에 선임된 날로부터 실근무 종료일 까지로 한다.
- ② 재임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제 7 조 (특별 공로금)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 4 조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제 4 조의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특별 공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개 폐)

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제정시행일)

이 규정은 분할주주총회 승인 후, 분할기일(201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1조 (상호)</p> <p>이 회사는 동양기전주식회사라 말한다.</p> <p>영문으로는 DONGYANG MECHATRONICS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p>	<p>제1조 (상호)</p> <p>이 회사는 디와이주식회사라 말하며, 영문으로는 DY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p>	상호 변경
<p>제2조 (목적)</p> <p>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공압기기 및 유공압기계 제조 및 판매업 2.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3. 일반기계 및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4. 각종 상품 구입 및 도산매업 5. 국내외 무역업 및 국내외 상사 대리점 6. 전기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업 7. 전기, 전자와 동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8. 각종 건설기계 및 특수사업 수송장비와 그 부분의 제조 및 판매업 9. 건설기계, 특장차,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각종기계의 매매 및 정비, 대여 10. 부동산 임대업 11.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 12. 기계장비 제조업 13. 폐기물처리 및 오염 방지시설 공사업 14.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및 판매업 15. 자동차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16. 항공 운수업 17. 통신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18. 전자전기 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19.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20.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업 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2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p>제2조 (목적)</p> <p>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기계 및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2. 각종 상품 구입 및 도산매업 3. 국내외 무역업 및 국내외 상사 대리점 4. 전기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업 5. 전기, 전자와 동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6. 각종 건설기계 및 특수사업 수송장비와 그 부분의 제조 및 판매업 7. 건설기계, 특장차,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각종기계의 매매 및 정비, 대여 8. 부동산 임대업 9.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 10. 기계장비 제조업 11. 폐기물처리 및 오염 방지시설 공사업 12.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및 판매업 13. 자동차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14. 전자전기 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15.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16.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업 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18.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19.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20.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업 21. 정보처리 내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조사용역, 생산, 판매, 유통, 컨설팅, 교육사업 22.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23.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2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사업목적의 분리와 신규사업 추가

<p>제10조 (신주인수권)</p> <p>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재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p>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p> <p>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p>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p>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p> <p>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격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p>개정된 자본시장법 상 신주의 발행/ 배정방식을 적용</p>
--------------------------------------------------------------------------------------------------------------------------------------------------------------------------------------------------------------------------------------------------------------------------------------------------------------------------------------------------------------------------------------------------------------------------------------------------------------------------------------------------------------------------------------------------------------------------------------------------------------------------------------------------------------------------------------------------------------------------------------------------------------------------------------------------------------------------------------------------------------------------------------------------------------------	---------------------------------------------------------------------------------------------------------------------------------------------------------------------------------------------------------------------------------------------------------------------------------------------------------------------------------------------------------------------------------------------------------------------------------------------------------------------------------------------------------------------------------------------------------------------------------------------------------------------------------------------------------------------------------------------------------------------------------------------------------------------------------------------------------------------------------------------------------------------------------------------------------------------------------------------------------------------------------------------------------------------------------------------------------------------------------------------------------------------------------------------------------------------------------------------------------------------------------------------------------------------------------------------------------------------------------------------------------------------------------------------------------------------------------------------------------------------------------------------------------------------------------------------------------------------------------------------------------------------------------------------------------------------	-----------------------------------------------------

<p>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경영·기술상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 및 합작예정법인 또는 제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5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3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p> <p>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p>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p> <p>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5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3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p>	<p>전환사채 발행과 배정에 관하여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신주의 발행/배정방식을 적용</p>
---------------------------------------------------------------------------------------------------------------------------------------------------------------------------------------------------------------------------------------------------------------------------------------------------------------------------------------------------------------------------------------------------------------------------------------------------------------------------------------------------------------------------------------------------------------------------------------------------------------------------------------------------------------------------------------------------------------------------------------------------------------------------------------------------------------------	------------------------------------------------------------------------------------------------------------------------------------------------------------------------------------------------------------------------------------------------------------------------------------------------------------------------------------------------------------------------------------------------------------------------------------------------------------------------------------------------------------------------------------------------------------------------------------------------------------------------------------------------------------------------------------------------------------------------------------------------------------------------------------------------------------------------------------------------------------------------------------------------------------------------------------------------------------------------------------------------------------------------------------------------------------------------------------------------------------------------------------------------------------------------------------------------------------------------------------------------------------------------------------------------------------------------------------------------------------	----------------------------------------------------

<p>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경영·기술상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 및 합작예정법인 또는 제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2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경)</p> <p>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p>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2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배정에 관하여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신주의 발행/배정방식을 적용</p>
<p>(신설)</p>	<p>부 칙</p> <p>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변경시행일</p>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채 규 전	1949.10.09.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이 근 모	1955.09.12.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채 규 전	(현) 산동유나이티드기계 동사장	서울대 공업교육과 졸업 대우중공업 근무 TEREX 근무	해당사항 없음
이 근 모	(현) Riverside Asia Partners 파트너	서울대 조선공학과 졸업 워싱턴주립대 경영학 석사 미래에셋증권 근무 삼정KPMG 근무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신규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분할기일부터 개시됨